제2치리서

I - 교회와 그 치리 일반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치리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 넓게 취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니, 그리하여 그것은 경건한 자들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언제나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위선자들까지 포함하는 무리요 교제이다.

다른 때에는 경건한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만을 가리키며, 때로는 진리를 고백하는 이들의 회중 가운데서 영적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 마지막 의미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유한 관할권과 치리를 행하니, 이는 온 교회의 위로를 위하여 행사된다.

이 교회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인 그의 교회에 주신 권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정당한 부르심에 의하여 교회의 영적 치리를 위임받은 이들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이 권세에서 흘러나오는 교회의 치리는 영적 통치의 질서 혹은 형태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일에 정해진 지체들에 의하여 행사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직원들에게 직접 주어지며, 그들에 의하여 온 몸의 유익을 위하여 행사된다.

이 권세는 여러 방식으로 사용된다. 때로는 주로 교사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행사되고, 때로는 직분과 책임을 맡은 이들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재판의 형식을 따라 연합하여 행사된다. 전자는 오직 potestas ordinis라 불리고, 후자는 potestas iurisdictionis라 불린다.

이 두 종류의 권세는 둘 다 하나의 권위, 하나의 근거, 하나의 최종 목적을 가지지만, 시행의 방식과 형태에 있어서는 다르니, 이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우리 선생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아 명백하다.

이 교회의 권세와 치리는, 국가 권세라 불리며 국가의 국정 통치에 속하는 저 권세와 치리와는 그 본성 자체에 있어 다르고 구별된다. 비록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바르게 사용된다면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경건하고 선한 백성을 두는 것을 지향하지만 그러하다.

이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며 영적인 것이니, 땅 위에 현세적 머리를 가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곧 자기 교회의 유일한 영적 왕이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가진다.

자기를 교회의 머리라 부르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거짓되이 찬탈한 칭호이니, 이 칭호는 천사에게도, 그 신분이 어떠하든 어떤 사람에게도 돌려서는 안 되며, 오직 교회의 유일한 머리요 군주이신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권세와 치리는 그 유일한 근거인 말씀에 직접 의지하여야 하며, 성경의 순수한

샘에서 취하여야 하니, 교회는 유일한 영적 왕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왕과 군주와 위정자들이 국가적으로 다스리는 신하들 위에서 주(主)와 지배자라 불리는 것은 그들에게 고유한 것이나, 교회의 영적 치리에 있어서 주와 선생이라 불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고유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다른 모든 이들은 그 안에서 지배권을 찬탈해서도 안 되고 주라 불려서도 안 되며, 오직 사역자, 제자, 종이라 불려야 한다. 이는 자기 교회를 보편적으로, 그리고 각 개별 교회를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역으로써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유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과 교회 신분의 다른 이들이 국가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위정자의 인격도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는 교회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관할권의 행사는 통상적으로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다.

국가 권세는 칼의 권세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열쇠의 권세라 불린다.

국가 권세는 영적 권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직무를 행사하고 수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영적 치리자들은 그리스도인 위정자에게 공의를 시행하고 악을 벌하며 그들의 경내에서 교회의 자유와 평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위정자는 신하들 가운데 외적인 평화와 평온을 위하여 외적인 일들을 명하고, 사역자는 오직 양심을 위하여 외적인 일들을 다룬다.

위정자는 오직 외적인 일들과 사람 앞에서 행해진 행위들만을 다루지만, 영적 치리자는 내적인 성향과 외적인 행위 둘 다를 양심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국가 위정자는 칼과 다른 외적 수단들로써 순종을 요구하고 얻지만, 사역은 영적인 칼과 영적인 수단들로써 그리한다.

위정자는 설교해서도, 성례를 집행해서도, 교회의 견책을 시행해서도 안 되며, 그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어떤 규칙을 정해서도 안 되고, 다만 사역자들에게 말씀에 명령된 규칙을 지키도록 명하고 범법자들을 국가적 수단으로 벌하여야 한다. 사역자들은 국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위정자에게 가르친다.

위정자는 교회의 관할권을 돕고 유지하며 강화하여야 한다. 사역자들은 말씀에 부합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의 군주를 도와야 하되, 국가의 일에 스스로 휘말려 자기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사역자들이 범죄하면 외적인 일들에 있어서 위정자의 판단과 처벌에 복종하는 것과 같이, 위정자들도 양심과 종교의 문제에서 범죄하면 교회의 권징에 스스로 복종하여야 한다.

II - 교회의 치리에 관하여, 그리고 그 시행이 위임된 사람들과 직원들에 관하여

국가의 치리에서 온 국가가 통치자 곧 위정자들과, 통치받는 자 곧 신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이, 교회의 치리에서도 어떤 이들은 치리자로 세워지고, 그 나머지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의 감동에 따라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으니, 언제나 한 분 머리요 으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러하다.

또한 교회의 치리 전체는 세 가지, 곧 교리와 권징과 분배로 이루어진다. 교리에는 성례의 집행이 덧붙여진다. 그리고 이 구분의 부분들에 따라 교회 안에 일종의 세 겹의 직원들, 곧 설교하는 사역자들, 치리하는 장로들, 분배하는 집사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말로 교회의 사역자들이라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유일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통치되지만,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의 사역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 이전에도, 율법 아래에서도, 복음의 시대에도 때때로 우리의 큰 위로를 위하여 영의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자기 교회의 영적 통치를 맡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의 영과 말씀으로써 자기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정의 모든 기회를 없애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그들이 형제들의 상호 동의와 권세의 동등함으로써, 각자 자기 직무에 따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신약과 복음의 시대에 그분께서는 말씀의 시행에 있어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의 사역을 사용하셨고, 선한 질서와 권징의 시행을 위하여서는 장로회를, 교회 재산을 돌보기 위하여서는 집사직을 사용하셨다.

이 교회의 직무들 가운데 어떤 것은 통상적이고, 어떤 것은 특별하거나 일시적이다. 특별한 직무는 세 가지이니, 곧 사도의 직분, 복음전도자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다. 이것들은 영구하지 않으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쳤으니,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동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다시 일으키기를 기뻐하시는 때는 예외이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네 가지 통상적인 직무 혹은 직분이 있으니, 곧 목사 혹은 사역자 혹은 감독의 직분, 교사의 직분, 프레스비터 혹은 장로의 직분,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다.

이 직분들은 통상적이며, 교회의 통치와 치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교회 안에 영구히 계속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직분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가 찬탈한 교권제도 안에서 고안된, 이 네 종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야심적인 칭호들은, 그것들에 딸린 직분들과 함께, 한마디로 배척되어야 한다.

Ⅲ - 교회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직분에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소명 곧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것이니, 이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직분에 오르게 되는 합법적인 길이다.

이 합법적인 부르심 없이는 누구든지 어떤 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결코 허용된 적이 없었다.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에 의한 직접적인 특별한 부르심인데, 이는 이미 세워지고 잘 개혁된 교회들에서는 자리가 없다.

다른 부르심은 통상적인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한 양심의 내적 증거 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교회에 세워진 질서에 따른 사람들의 합법적인 승인과 외적인 판단이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선한 증거 없이는, 누구도 감히 어떤 교회의 직분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

이 통상적이고 외적인 부르심에는 두 부분, 곧 선출과 안수가 있다. 선출은 장로회의 판단과, 그 사람 혹은 사람들이 세워질 회중의 동의에 의하여, 빈 직분에 가장 유능한 사람 혹은 사람들을 골라 뽑는 것이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을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종교의 건전함과 삶의 경건함에 있으니, 이는 말씀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선출의 질서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가 세워질 회중의 뜻에 반하여, 혹은 장로회의 의견 없이 교회의 어떤 직분에 강제로 들어앉혀지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누구도 세상적인 고려 때문에 이미 사람이 세워진 자리나 비지 않은 어떤 자리에 강제로 들어앉혀지거나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직록이라 불리는 것은 합법적으로 부르심받은 사역자들의 생활비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안수는 세워진 사람이 잘 시험받고 자격이 있음이 드러난 후에, 그를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하여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이다.

안수의 의식은 금식과 간절한 기도와 장로회의 안수이다.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켜지고 그분에 의하여 그들이 부르심받은 일에 유능하게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이들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경이 그들에게 주는 칭호와 이름들만을 취하여야 하니, 곧 수고와 노고와 일을 뜻하며 직분과 섬김의 이름이요, 게으름이나 위엄이나 세상적 영예나 우월함의 이름이 아닌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명시적으로 책망하시고 금하셨다.

이 모든 직원들은 자기 자신의 특정한 양 떼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두가 그들과 함께 거주하여야 하며, 각자 자기 소명에 따라 그들을 살피고 감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들은 모두 자기 소명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 두 가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의 덕을 세움을 존중하여야 한다.

Ⅳ - 개별 직원들에 관하여, 그리고 먼저 목사 혹은 사역자에 관하여

목사, 감독, 혹은 사역자는 특정한 회중들에 세워진 이들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회중을 다스리며 그 위에서 파수한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때로 목사라 불리니 그 회중을 먹이기 때문이요, 때로 Episcopi 곧 감독이라 불리니 그 양 떼 위에서 파수하기 때문이요, 때로 사역자라 불리니 그 섬김과 직분 때문이요, 또 때로는 장로 혹은 연장자라 불리니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여야 할 영적 통치를 돌봄에 있어 그들이 지녀야 할 품행의 진중함 때문이다.

사역에 부르심을 받거나 스스로 그 일에 나서는 이들은 그들에게 일정한 양 떼가 배정되지 않고서는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합법적인 부르심 없이 스스로 이 직분에 끼어들거나 그것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일단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사람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이들은, 일단 사역의 책임을 받아들인 후에는 그 직무를 떠날 수 없다.

이탈자들은 권고를 받아야 하며, 완고할 경우에는 마침내 출교되어야 한다.

어떤 목사도 지방 회의나 전국 회의의 허락 없이 자기 양 떼를 떠날 수 없으니, 만일 그가 그렇게 하고 권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의 견책이 그에게 내려지게 하라.

목사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속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명하는 대로 언제나 덕을 세우고 자기 양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수고하여야 한다.

말씀의 시행과 마찬가지로 성례의 시행도 오직 목사들에게만 속한다. 이는 둘 다 우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니, 하나는 귀로써, 다른 하나는 눈과 다른 감각들로써 가르쳐, 둘 다에 의하여 지식이 마음에 전달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백성을 위하여, 특히 자기 책임에 맡겨진 양 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 목사에게 속하니, 주께서는 자기의 신실한 종들의 축복이 헛되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또한 자기 양 떼의 품행을 살펴야 하니, 이는 방탕한 자들을 책망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권면함에 있어 교리를 그들에게 더 잘 적용하기 위함이다.

장로회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교회에 주어진 열쇠의 권세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든 매고 푸는 선고를 선포하는 것은 사역자에게 속한다.

마찬가지로 그 일에 관하여 장로회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혼인으로 결합될 이들 사이에 혼인을 거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거룩한 결속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주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도 그에게 속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역자의 직분에 속하는 교회의 일들에 관하여 회중 앞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할 모든 공적인 선포도 그에게 속한다. 이는 그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자요 전령이기 때문이다.

V - 교사와 그 직분에 관하여, 그리고 학교에 관하여

말씀에 수고하는 두 가지 통상적이고 영구한 직무 가운데 하나는 교사의 직분이니, 그는 또한 선지자, 감독, 장로, 교리문답 교사, 곧 교리문답과 종교의 기초를 가르치는 교사라고도 불릴 수 있다.

그의 직분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영의 뜻을 사역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적용 없이 단순하게 풀어 밝히는 것이니, 이는 신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건전한 교리가 가르쳐지며, 복음의 순수함이 무지나 악한 견해로 말미암아 부패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름에서뿐 아니라 은사의 다름에서도 목사와 다르다. 교사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주어져 단순한 가르침으로 믿음의 비밀들을 풀어 밝히게 하고, 목사에게는 지혜의 은사가 주어져 경우가 요구하는 대로 권면으로써 그것을 양 떼의 품행에 적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이름과 직분 아래 우리는 또한 학교와 학원과 대학의 제도도 포함하니, 이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주의 깊게 유지되어 왔다.

교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로이므로,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 목사를 도와야 하며 모든 회의에서 그의 형제인 장로들과 함께하여야 한다. 이는 교회의 일에 있어서 유일한 재판관인 말씀의 해석이 그의 책임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성에게 설교하는 것, 성례를 집행하는 것, 혼인을 거행하는 것은, 그가 달리 통상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 한 교사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사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으니, 그는 흔히 그 목적에 적합하며, 이는 폴리카르푸스와 다른 이들의 예가 증언하는 바와 같다. 등등.

VI - 장로와 그 직분에 관하여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은 때로는 나이의 이름이고, 때로는 직분의 이름이다. 그것이 어떤 직분의 이름일 때, 때로는 넓게 취해져서 연장자 혹은 장로라 불리는 이들뿐 아니라 목사와 교사도 포함한다.

우리의 이 구분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다스리는 자 혹은 통치자라 부르는 이들을 장로라 부른다. 그들의 직분은 통상적인 것과 같이 영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언제나 필요하다. 장로직은 사역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직무이다.

일단 합법적으로 그 직분에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행사하기에 합당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로들은 다시 그것을 떠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떤 회중들에서는 장로들을 그만큼 많이 뽑아서, 율법 아래에서 성전을 섬김에 있어 레위인들 가운데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 중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적당한 기간 동안 교대하게 할 수도 있다.

각 회중의 장로의 수는 잘 제한될 수 없으며, 백성의 경계와 필요에 따라야 한다.

모든 장로가 또한 말씀의 교사일 필요는 없으나, 으뜸 되는 이들은 그러하여야 하며, 그러한 이들은 배나 존경받기에 합당하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말씀, 특히 사도 바울이 쓴 규범들에 맡긴다.

그들의 직분은 개별적으로나 연합하여서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들의 책임에 맡겨진 양 떼를 부지런히 살펴 종교나 품행의 어떤 부패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에 부지런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장로들은 백성 가운데서 그 열매를 찾는 일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의 상에 나아오는 이들을 심사함에 있어 목사를 돕는 것이 그들에게 속하며, 또한 병자를 심방하는 일도 그러하다.

그들은 개별 회의와 총회 회의 양쪽의 결의들이 주의 깊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복음의 규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그 의무를 권고하는 일에 부지런하여야 한다.

그들이 사적인 권고로 바로잡을 수 없는 일들은 장로회에 가져가야 한다.

그들의 주된 직분은 역시 그들의 수에 속하는 목사와 교사와 함께 선한 질서의 확립과 권징의 시행을 위하여 회의를 여는 것이니, 그들의 경계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은 이 회의에 복종한다.

VII - 장로회와 회의와 권징에 관하여

장로회와 회의는 일반적으로 목사와 교사와, 우리가 흔히 장로라 부르는 이들, 곧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지 않는 이들로 구성되니, 이들과 이들 각각의 권세에 관하여는 이미 말하였다.

회의에는 네 종류가 있다. 그것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별 교회와 회중의 회의이거나, 한 지방의 회의이거나, 한 민족 전체의 회의이거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여러 민족의 회의이다.

모든 교회의 회의는 교회에 관한 일과 그 책임에 속하는 일을 다루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함께 모일 권세를 가진다.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하여 때와 장소를 정할 권세를 가지며, 한 모임에서 다른 모임의 날짜와 때와 장소를 정할 권세를 가진다.

모든 회의에서는 모인 형제들 전체의 공동 동의에 의하여 한 사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니, 그는 안건을 제출하고, 표결을 모으며, 회의에서 선한 질서가 지켜지게 하여야 한다.

주로 의장은 회의에서 오직 교회의 일만 다루어지고 국가 관할권에 속하는 어떤 일에도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회의는 그 관할 경계 안에서 모든 일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보도록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찰자를 보낼 권세를 가진다.

여러 교회를 시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있는 통상적인 교회 직분이 아니며, 감독의 이름을 시찰자에게만 돌려서도 안 되고, 그것이 언제나 한 사람의 인격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pro re nata 시찰하도록 자격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장로회의 몫이다.

회의의 최종 목적은 첫째로 종교와 교리를 오류와 부패 없이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요, 다음으로 교회 안에 단정함과 선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 질서를 위하여 그들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자기 소명에 있어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에 관한 일정한 규칙과 법규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교회의 일에 관한 모든 법령과 규례 가운데 해롭고 무익하며 시대에 맞지 않거나 백성에 의하여 남용되는 것으로 드러난 것들을 폐지하고 철폐할 권세를 가진다.

그들은 교회의 선한 질서와 치리를 범하는 모든 자와 교만하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권징과 처벌을 시행할 권세를 가지며, 그리하여 권징 전체가 그들의 손에 있다.

첫 번째 종류의 회의는 비록 개별 회중들 안에 있지만, 상호 동의로써 교회의 권세와 권위와 관할권을 행사하며, 그러므로 때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닌다.

우리가 개별 회중들의 장로들에 관하여 말할 때, 모든 개별 교구 교회가, 특히 시골에서, 각자 자기 자신의 개별 장로회를 가질 수 있다거나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셋, 넷, 혹은 그보다 많거나 적은 개별 교회들이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의 장로회를 가져 그들의 교회 사건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개별 회중에서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 공동 회의에서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하게 하고, 자기 교회들 안의 범죄에 대한 고발을 받아 회의에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우리는 초대 교회의 관행에서 끌어내니, 그곳에서는 도시들과 이름난 곳들에 장로들 혹은 연장자들의 단체가 세워졌다.

그들의 개별 장로회의 권세는 그들의 책임에 맡겨진 경계 안에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교회들이 선한 질서 가운데 유지되게 하고, 악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조사하며, 권고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써, 혹은 징계로써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애쓰는 것이다.

그들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며, 권징이 바르게 유지되고, 교회 재산이 부패함 없이 분배되도록 주의하는 것이 장로회에 속한다.

지방 회의, 전국 회의, 총회 회의에서 만든 규례들이 지켜지고 시행되게 하는 것이 이 종류의 회의에 속한다.

그들이 다스리는 개별 교회들의 단정한 질서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τὸ πρέπον에 관한 법규를 만드는 것도 그러하니, 다만 그들은 총회 회의나 지방 회의가 만든 어떤 규칙도 변경하지 않아야 하

며, 그들이 만들 규칙들을 지방 회의에 미리 알려야 하고, 그 교회들에 해가 되는 경향이 있는 규칙들은 폐지하여야 한다.

그것은 완고한 자를 출교할 권세를 가진다.

교회의 책임을 맡을 이들을 선출하는 권세는, 잘 세워지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여러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경우, 그들 자신의 경계 안에서 이 종류의 회의에 속한다.

같은 이유로 그들의 면직도 이 종류의 회의에 속하니, 곧 오류가 있고 부패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추문이 있는 삶을 살며 권고를 받은 후에도 그치지 않는 자들, 분열이나 교회에 대한 반역에 빠진 자들, 명백한 신성모독, 성직매매, 뇌물로 인한 부패, 거짓, 위증, 음행, 도둑질, 술 취함,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만한 싸움, 고리대금, 춤, 불명예, 그리고 교회에서 분리되어야 마땅한 다른 모든 자들의 경우이다.

자기 책임을 수행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이들도 면직되어야 하며, 그에 관하여 다른 교회들에 알려서 그들이 면직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이나 질병이나 다른 사고로 말미암아 자기 직분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이들은 면직되어서는 안 되니,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의 영예가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고, 그들의 교회가 그들을 부양하여야 하며, 그들의 직분을 수행할 다른 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 회의란 한 지방의 목사, 교사, 그리고 다른 장로들이 그 지방 교회들의 공동의 일을 위하여 모인 합법적인 집회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니, 이는 또한 교회와 형제들의 협의회라고도 불릴 수 있다.

이 회의들은 필요가 요구하는 대로, 그 지방 안의 형제들의 상호 동의와 도움으로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회의는 개별 회의들에서 잘못 행해졌거나 잘못 저질러진 모든 일을 다루고, 정리하며, 바로잡을 권세를 가진다.

그것은 박탈받아 마땅한 선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지방의 직원들을 면직할 권세를 가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회의들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개별 장로회들의 모든 권세를 가진다.

전국 회의는 우리에게는 총회이니, 그것이 행해지고 모이는 왕국 혹은 민족의 모든 교회가 교회의 공동의 일을 위하여 모인 합법적인 집회이며, 왕국 안 모든 교회의 총 장로회라 불릴 수 있다. 이 회의에 나와 투표할 의무가 있는 이들은 오직 교회의 사람들뿐이니, 그 수는 같은 회의가 좋다고 여기는 만큼이다. 그러나 안건을 제출하고, 듣고, 논의하기 위하여 이 회의에 나오려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회의는 지방 회의들에서 잘못 저질러졌거나 잘못 행해진 모든 일이 바로잡히고 다루어지며, 왕국 안 교회의 온 몸의 유익에 일반적으로 이바지하는 일들이 미리 살펴지고, 다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돌보아야 한다.

그것은 다른 두 종류의 회의가 모든 일에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그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이 회의는 영적 관할권과 국가 관할권이 교회에 해가 되도록 혼동되지 않게, 교회의 재산이 소모되거나 남용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왕국 안 모든 교회의 유익과 선한 질서에 관련된 모든 중대한 일에 관하여 그 권위를 개입시켜야 한다.

이것들 외에 또 다른 더 일반적인 종류의 회의가 있으니, 이는 교회 안의 모든 민족과 모든 신분의 사람들의 회의로서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를 대표하며, 본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총회 혹은 일반 공의회라 불릴 수 있다.

이 회의들은 특히 교회 안에 어떤 큰 분열이나 교리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 정해지고 소집되었으며, 하나님의 보편 교회 안의 분열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경건한 황제들의 명령으로 소집되었다. 이 회의들은 어느 왕국의 개별 상태에 속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VIII - 집사와 그 직분에 관하여, 교회 안의 마지막 통상적 직무

Διάκονος라는 말은 때로 넓게 취해져서, 사역에 있어서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서 영적 직무를 맡은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로는, 그것은 오직 신자들의 구제금과 교회 재산을 거두고 분배하는 일이 속한 이들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된 집사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통상적이고 영구한 교회의 직무이다.

이 직무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자질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성경에 맡긴다.

집사는 다른 영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고 선출되어야 하니, 그 선출에 관하여는 앞에서 말하였다.

그들의 직분과 권세는 교회 재산 전체를 받아서, 그것이 정해진 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 일을 그들은 노회들 곧 장로회들(집사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하니, 이는 교회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이 개인들의 용도로 전용되거나 부당하게 분배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IX - 교회의 재산과 그 분배에 관하여

교회의 재산이란, 이전에 언제든지 주어졌거나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 혹은 그리스도교를 고백하는 나라들의 동의나 보편적인 관습에 의하여 교회의 공적 용도와 유익에 쓰이도록 된 모든 것을 우

리는 뜻한다.

그리하여 재산이라는 말 아래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섬김을 위하여 주어졌거나 주어질 모든 것, 곧 토지, 건물, 소유지, 연간 지대,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니, 이는 왕이나 군주나 그들보다 낮은 어떤 사람들이 증여, 기부, 영구 양도, 혹은 다른 어떤 합법적인 명의로 교회에 부여한 것이며, 여기에 신자들의 지속적인 헌물도 함께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법이나 관습이나 나라들의 관행에 의하여 교회의 용도와 유익에 쓰이도록 된 모든 것을 포함하니, 십일조, 목사관, 목사 경작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하며, 이것들은 일반법과 지방법과 보편적인 관습에 의하여 교회가 소유한다.

이 재산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하여 어떤 사람의 사사롭고 속된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신성모독으로 여긴다.

교회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집사들에 의하여 거두어지고 분배되어야 하니, 이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이 염려나 근심 없이 부양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시대의 교회에서 집사들은 신자들에게서 거둔 금액이 얼마이든 그것을 거두고 분배하도록, 곧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세워졌으니, 그리하여 신자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없었다.

이 헌금들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구제의 방식으로 거둔 것만이 아니라, 동산과 부동산, 토지와 소유지 같은 다른 재산들이었으니, 그 값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였다.

이 직분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 집사들의 손에 계속 있었으니, 옛 교회법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교회의 상태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부패하기까지 그러하였다.

같은 교회법들은 교회 재산의 네 겹의 분배를 언급하니, 그 한 부분은 목사 혹은 감독의 생계와 손님 대접을 위하여 쓰였고, 다른 부분은 장로들과 집사들과 모든 성직자에게, 셋째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나그네들에게, 넷째는 교회의 다른 일들, 특히 특별한 일들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

여기에 우리는 학교와 학교 교사들도 덧붙이니, 그들은 같은 재산으로 부양되어야 하고 또 잘 부양될 수 있으며, 성직자 아래 포함된다. 그들에게 우리는 또한 개별 회의와 총회 회의 양쪽의 서기들, 교회 일의 대리인 혹은 대변인들, 시편 선창자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의 다른 통상적인 직원들을 필요한 한도 안에서 덧붙인다.

X -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위정자의 직분에 관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자 자기 소명에 있어서, 그리고 그에 따라,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진전시킬 의무가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 군주들과 다른 위정자들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그들이 성경에서 교회의 양육자라 불리기 때문이니, 그들에 의하여 교회가 유지되고, 양육되며, 떠받쳐지고, 교회를 해치려는 모든 자에 맞서 방어되기 때문이요, 적어도 그러하여야 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교회의 경건한 진행을 돕고 강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위정자의 직분에 속하니, 특히 교회의 공적 상태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땅한 대로 유지되고 부양되는지 살피는 것이다.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삯꾼들에 의하여 침입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의 자리들이 벙어리 개들이나 게으른 배들에 의하여 차지되지 않도록 살피는 것.

교회의 권징을 돕고 유지하며, 교회의 견책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국가적으로 벌하되, 언제나 한 관할권을 다른 관할권과 혼동하지 않는 것.

사역과 학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살피고, 만일 그들이 자기 직무에 전념하기에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필요한 경우 자기 자신의 수입으로라도 그들의 궁핍을 채우는 것.

그들의 인격을 상해와 공공연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수입과 소유를 보호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어, 그들이 그것을 사취당하거나 강탈당하거나 약탈당하지 않게 하는 것.

교회의 재산이 속되고 불법적인 용도에 쓰이거나, 게으른 배들과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직무가 없는 자들에 의하여 삼켜져서, 그것이 마땅히 쓰여야 할 사역과 학교와 가난한 자들과 다른 경건한 용도에 해를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교회와 그 치리의 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법과 법규를 만들되, 국가의 칼에 속하지 않고 순전히 교회적인 직분들에 속하는 어떤 것도 찬탈하지 않는 것이니, 말씀과 성례의 사역, 교회 권징의 사용과 그 영적인 시행, 혹은 우리 선생께서 사도들과 그들의 참된 후계자들에게 주신 영적 열쇠의 권세의 어떤 부분도 그러하다.

그리고 비록 경건한 왕들과 군주들이 교회가 부패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할 때에 때로는 유다의 어떤 경건한 왕들과, 여러 경건한 황제들과, 신약의 빛 가운데서 또한 왕들이 보인 본을 따라, 자기 자신의 권위로 사역자들을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였지만, 교회의 사역이 일단 합법적으로 세워지고, 세워진 이들이 그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곳에서는, 모든 경건한 군주들과 위정자들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경외하여야 한다.

XI - 교회 안에 남아 있는 현재의 폐단들로서 우리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 왕국 안에서 그의 말씀의 설교와 성례의 참된 집행으로 허락하신 현재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경건한 위정자의 의무인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모든 폐단이 제거되고 완전히 없어지도록 조치하는 것도 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그리스도의 개혁 교회 안에서 섬기지도 않고 아무런 직무도 가지지 않는 교황주의적 성직록 칭호들, 곧 수도원장, 성직록 관리인, 수도원 부원장, 여자 수도원 부원장, 그리고 수도

원들의 다른 칭호들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명백한 폐단이다. 그 수도원들의 자리는 이제 대부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허물어지고 우상숭배로부터 정화되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수도원과 주교좌 교회와 그와 같은 곳들의 참사회와 수도회라 불리던 자들은, 만일 교회 토지와 십일조 가운데 무엇이라도 남아 있다면, 날마다의 경험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교회에 손해와 불이익이 되도록 봉토 계약과 임대 계약을 내주는 일 외에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으니, 그러므로 완전히 폐지되고 철폐되어야 한다.

같은 성격의 것으로는 주임 사제, 부주교, 성가대장, 부성가대장, 재무관, 상서관, 그리고 오직 교황과 교회법에서만 흘러나온 그와 같은 칭호를 가진 다른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개혁 교회 안에 자리가 없다.

또한 그들의 성직록에 합병으로 결합되고 연결된 교회들은 분리되고 나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자격을 갖춘 사역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교회 재산을 남용하는 이러한 자들은 교회와 교회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거나 추밀원에 앉아서도 안 되니, 이는 교회의 자유와 개혁 교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왕국의 법률에 해와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복음의 빛 가운데서 군주의 허락에 의해서든 교회의 허락에 의해서든, 모두 영혼을 돌볼 책임을 요구하는 다섯, 열여섯, 스물 혹은 그 이상의 교회를 가지고 그 재산을 누리는 것은 더욱 합법적이지 않다. 이는 이러한 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조롱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후 1571년에 리스에서 정한 규정에서 이러한 자들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그 이른바 규정은 모든 선한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세상일에 자격이 있거나 궁정에서 섬기기에 자격이 있는 자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자격이 있고 교회의 합법적인 허입을 받은 자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감독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만일 ἐπίσκοπος라는 이름이 본래의 뜻으로 취해진다면, 앞서 선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사역자들과 똑같다. 이는 그것이 우월함과 주권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과 파수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의 부패 가운데 이 이름이 (다른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남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으므로, 우리는 이 새로 선출된 감독들의 방식도, 그들을 그들이 선출되는 그러한 직분에 선출하는 자들인 참사회들도 인정할 수 없다.

참된 감독들은 특정한 양 떼에 자신을 바쳐야 하는데, 그들 가운데 여럿은 이를 거부한다. 또한 그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자기 형제들과 그리스도의 기업 위에 주권을 찬탈해서도 안 된다.

목사들은 목사인 한, 여러 교회를 시찰하는 직분이 목사직에 결합되어 있지 않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그러하다.

감독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시찰 경계를 가지는 것은 부패이다.

누구도 그 일에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가 아니면 시찰의 직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잘 세워진 장로회들은 자기 장로회 안의 경계를 시찰할 위임을 주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찰자를 보낼 권세를 가지며,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 보고를 받은 후에 때때로 그들을 계속 두거나 해임할 권세를 가지니, 시찰자들은 언제나 이 장로회들에 복종하여야 한다.

목사의 인격 안에 있는 형사 관할권은 부패이다.

감독들이 목사들의 목사, 많은 양 떼의 목사이면서도 일정한 양 떼가 없고 통상적인 가르침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들이 형제들의 징계와, 그들이 섬기게 될 교회의 개별 장로회의 권징에서 면제되는 것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들이 다른 교회들을 시찰하는 직분이나 다른 사역자들 외에 어떤 다른 직무를 찬탈하는 것도 그러하니, 다만 교회에 의하여 그들에게 위임되는 한도에서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감독들이 총회 교회가 그들에게 정해 줄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 질서에 동의하여, 교회의 일에서든 국가의 일에서든 그들의 경계를 넘지 않든지, 아니면 교회 안의 모든 직무에서 면직되든지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역자들이 요청을 받을 때 말씀에 부합하는 모든 일에서, 추밀원에서든 의회에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그들의 군주를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니, 다만 언제나 그들이 자기 본연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도 않고, 군주들에게 아첨하여 교회의 공적 상태를 해치지도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어떤 칭호 아래서든, 특히 교황주의에서 남용된 칭호들인 고위 성직자, 수도회, 참사회의 칭호 아래서는, 이 왕국 안의 개혁 교회로부터 아무 위임도 받지 않은 자는 누구도 추밀원에서든, 의회에서든, 추밀원 밖에서든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회의 법령으로, 교황주의 교회와 관할권은 이 왕국 안에서 아무 자리도 가져서는 안 되며, 어떤 감독이나 다른 고위 성직자도 앞으로는 그의 권위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관할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개혁 교회 안에 있고 앞으로 있을 관할권,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관할권 외에는, 이 왕국 안에서 다른 어떤 교회 관할권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후 1560년 이래로 주교좌 교회나 수도원이나 대학이나 다른 수도회 장소에서 교황주의 방식으로 참사회를 여는 것, 곧 교회의 이름과 권위를 찬탈하여 교회의 재산을 해치거나, 교회에 불이익이 되는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폐단이요 부패로 여기니, 이는 참된 교회의 자유와 왕국의 법률에 어긋나며, 그러므로 무효화되고 원상 회복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교황주의 관할권에 딸린 것들도 폐지되어야 하니, 교회 법원 판사들의 혼합된 관할권이 이에 속한

다. 이는 그들이 교회의 일에 관여하면서도 그 일에 대하여 교회로부터 아무 위임도 받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던 우리 군주의 모친의 시대에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럿이 교회의 아무 직무도 가지지 않으면서 사역자들의 재판관이 되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면직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서 재판관이 될 수 있는지 한정되어 교회의 자유를 해치지 않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전에 교황의 교회에서 교회 신분에 속하였던 자들, 혹은 새로 교황주의 칭호에 허입되어 지금 왕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들의 교회 수입의 삼분의 이를 소유하도록 용인된 자들은, 평생 동안 그들에게 배정되고 허락된 몫을 관리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되며, 그들이 가졌던 남용된 칭호들 아래서 교회 수입을 처분하고 그 봉토 계약과 임대 계약을 마음대로 내주어, 교회와 교회 토지 위에 사는 가난한 농부들에게 큰 해를 끼쳐서는 안 되니, 이는 모든 선한 양심과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XII - 우리가 간청하는 개혁의 몇 가지 특별한 조항들

교회의 직분들에 관하여, 직원들의 각각의 권세와 또한 그들의 연합된 권세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산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요구하시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니, 곧 교회가 그에 따라,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저 질서로써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상태에 관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로 개혁되기를 구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다루어야 할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다음의 조항들로 모았다.

온 나라가 지방들로 나뉘고, 이 지방들이 다시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나 교구들로 나뉘어 있으므로, 각 교구와 적정한 회중에는 양 떼를 먹일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목사가 세워져야 하며, 어떤 목사나 사역자도 결코 오직 하나뿐인 교회나 양 떼보다 더 많은 교회나 양 떼의 개별적 책임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나 왕국의 모든 교구 교회에 목사나 사역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여겨질 것이므로, 우리는 교회와 군주가 위임을 줄 수 있는 이들의 조언에 따라, 시골이나 작은 마을들의 교구들을 어떤 곳에서는 둘이나 셋이나 그 이상을 함께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요하고 가장 편리한 교회들은 남겨 두어 충분히 수리하고, 자격을 갖춘 사역자들을 거기에 세우며,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다른 교회들은 허물어지도록 버려두되, 그 교회 묘지들은 언제나 매장지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가 요구하는 어떤 곳에서는, 회중이 한 교회에 비하여 너무 큰 교구를 둘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과 학원과 다른 필요한 곳에 교사들을 세우고 충분히 부양하여, 성경의 뜻을 풀어 밝히고, 학교를 맡으며, 종교의 기초를 가르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장로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각 회중에 한 사람 혹은 그 이상, 백성의 품행을 감찰하는 자들이 있어야 할 것이나, 모든 개별 교회에 장로들의 회의를 둘 것이 아니라, 오직 도시와 이름난 곳에만 두어

야 하니, 그곳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판단력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주변 개별 교회들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그들 사이에 공동의 장로회와 회의 장소를 가지고, 그들이 감독하는 회중들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필요와 편의가 요구하는 대로 교구들을 합치고 나누도록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과 같이, 총회 교회가 군주의 동의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들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 곧 개별 장로회들이 모일 장소들을 지명하고 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이니, 그들은 예로부터 나뉘어 있던 주교구들과, 왕국의 나라들과 지방들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 회의와 대회에 관하여서도, 그것이 몇 개이며 어느 곳에서 열려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모여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쉬울 것이니, 이는 총회 교회의 자유와 그 안에서 정해질 질서에 맡겨져야 한다.

이 나라의 전국 회의들, 곧 흔히 총회라 불리는 회의들은 언제나 그 고유한 자유 가운데 보존되어야 하며, 그 고유한 자리를 가져야 한다.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편리한 때와 장소를 정할 권세를 가지며, 위정자들이든 아랫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이 교회의 사건들에 있어서 그 판결에 복종하여야 하고, 왕국 안의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재판관에게도 이의 제기나 상소를 할 수 없어야 한다.

교회의 직무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선출하는 자유, 곧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부패하지 않았던 동안 중단 없이 지켜졌던 그 자유가, 이 왕국 안에서 회복되고 보존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그리하여 사도적이고 초대적인 교회의 관행과 선한 질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누구도 합법적인 선출과, 그 사람이 그 위에 세워질 백성의 동의 없이, 군주에 의해서든 어떤 아랫사람에 의해서든 어떤 회중에게 강제로 들어앉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이 질서는 교황의 교회에서 사용된 성직 추천권과 성직록 추천과 함께 설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지하게 숙고하기를 바라니, 성직 추천권과 성직록의 이름들은 그 효과와 함께 오직 교황과 교회법의 부패로부터 흘러나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Curam animarum을 가진 교회들 위에 강제로 들어앉혀지거나 세워졌던 한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진행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말씀과 앞서 말한 선출의 자유에 어긋나므로, 그것들은 이제 이 개혁의 빛 가운데서 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진전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교회의 올바른 상태가 요구하는 그 치리와 질서도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고백한 것이 헛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바 curam animarum을 가지지 않은 성직록들의 다른 추천권들, 곧 예배당 성직록, 현세의 토지에 기초한 참사회 성직록, 연금,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옛 추천권자들에게 유보되어, 그것들이 비게 될 때 의회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과 장학생들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교회 수입 일반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수한 관행과 함께 설 수 있는 그 질서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유지되기를 바란다.

곧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의 수입과 재산 전체는, 앞에서 언급한 작은 추천권들을 제외하고, 네 몫으로 나뉠 수 있으니, 그 하나는 목사에게 그의 생계와 손님 대접을 위하여 배정되고, 다른 하나는 장로들과 집사들과 교회의 다른 직원들, 곧 회의의 서기들, 시편 선창자들, 교회 관리인들과 교회지기들에게 필요한 한도 안에서 배정되며, 필요가 요구하는 곳에서 옛 기부 재단을 돕기 위하여 교사들과 학교들도 그들과 함께 연결된다. 셋째 몫은 신자들 가운데 가난한 지체들과 구빈원들에게 쓰이고, 넷째는 교회들의 수리와, 교회에 유익한 다른 특별한 비용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위하여서도 쓰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재산이 거두어져서 그것이 속한 이들에게 신실하게 분배되기를 바라니, 이는 집사들의 사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징수와 분배는 본래 그들의 직분에 속한다. 이는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몫을 받고, 사역에 있는 이들이 염려와 근심 없이 살며, 또한 교회 금고의 나머지가 보존되어 그 올바른 용도에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이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어 선출된다면, 이전에 속된 징수관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이 자기 직분에서 그릇 처신할 염려는 없다.

그러나 이 소명이 많은 이들에게 위험하게 보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예로부터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목사들과 장로회에 해마다 회계 보고를 할 의무를 지게 하고, 만일 교회와 군주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신실함을 위하여 보증인들이 의무를 지게 하여, 교회 수입이 어떤 방식으로도 탕진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 질서가 시행되도록, 군주의 임명에 의해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교회 수입을 관리하는 다른 모든 자들, 곧 총징수관이나 특별 징수관들은 그것에 대한 더 이상의 관리에서 해제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교회 수입이 전적으로 집사들의 사역에 의하여 관리되고 앞서 언급한 용도에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 수입이 그것이 정해질 이 용도들에 충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토지이든 십일조이든 교회 수입의 모든 양도와 봉토 계약이나 임대 계약의 설정으로서 옛 지대 대장에 해가 되고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원상 회복되고 무효화되며, 교회의 재산이 이전의 옛 자유로 회복되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전에 귀족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바와 같이, 십일조가 땅을 경작하는 농부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임대되지 않든지, 아니면 전혀 임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XIII - 이 개혁으로부터 모든 신분에게 흘러나올 유익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 통치와 치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전되며, 그의 신비한 몸에 속한 모든 이들이 양심에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목적들을 참으로 존중하는 모든 이들이 양심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이 질서에 동의하고 순응

하며, 그들의 힘이 닿는 데까지 그것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담대히 단언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이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가 요구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에 어긋나는 모든 부패를 거부함에 있어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종교를 고백하는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과 교회들에게 선하고 경건한 질서의 본보기와 모범이 될 것이니,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오류 없이 말씀의 순수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온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그의 이름에 찬양이 있기를!), 우리가 같은 말씀과 개혁의 순수함이 우리 손에 요구하는 저 권징과 치리와 선한 질서에 우리 자신을 순응시킬 때, 그들도 우리의 행실에서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두려운 선고가 우리에게 마땅히 선언될 수 있으니, 곧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등등.

더욱이, 만일 우리가 우리 가운데 그토록 크게 늘어나고 불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지체들에 대하여 어떤 경건한 마음이나 존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교회의 재산 가운데 정당하게 그들에게 속한 몫을 더 이상 사취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질서가 정당하게 시행된다면, 그들의 짐이 우리에게서 벗겨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거리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으로부터 깨끗해질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추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이 비방을 받게 하고, 원수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며, 단순하고 경건한 이들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는 추문이 되어 왔다.

이 밖에도, 이것은 온 평민들에게 큰 안도와 편익이 될 것이니, 그들의 교회를 짓고 유지하는 일과, 다리와 다른 이와 같은 공공 공사를 세우는 일에서 그들을 덜어 줄 것이다. 또한 땅을 경작하는 농부들에게는 그들의 십일조 납부에 있어서, 그리고 요컨대 그들이 지금까지 거짓되이 교회 사람들이라 불리던 자들과 그들의 임차인들, 대리인들, 관리인들, 그리고 착취자들에 의하여 가혹하게 다루어져 온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할 것이다.

끝으로, 왕 폐하와 이 나라의 국가에는 이러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니, 곧 앞서 말한 분배에 따라 교회의 다른 일들이 충분히 공급된 후에, 교회 금고에 모인 잉여는 유익하게 사용되고, 군주와 국가의 일들, 특히 교회들의 수리를 위하여 정해진 몫의 특별한 지원에 넉넉히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모든 이들이 기꺼이 이 질서에 자신을 맞추고, 백성은 그에 따라 다스림을 받기를 감수하며, 군주들과 위정자들도 면제되지 않고, 교회 신분에 세워진 이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덕이 세워지며 그 경계가 넓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라가 세워지며, 사탄과 그의 나라는 전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위로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니,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모든 영원토록 복되시도다. 아멘.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